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09
----------	------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가능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안 제4조)
- 나. 지정의 취소(안 제5조)
 -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의 취소 조항 규정
- 다. 준용(안 제6조)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준용 조항 규정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제19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2. 7. 29. ~ 2022. 8. 18.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 지방자치단체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0. 관련부서 :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터”란 한 필지 내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부분으로서 필지 전체 또는 일부의 지면과 진출입로를 포장 또는 땅 고르기를 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내용을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교통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팀장 직위 · 성명	교통정책팀장 정주연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이동진 (5182-1244)

관계법령 발췌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 25. (생략)

2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 ⑫ (생략)

붙임**지방자치단체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법 규 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5.09.23.
시흥시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6.12.30.
양산시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7.04.0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8.12.28.
당진시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9.05.30.
금산군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19.08.16.
청주시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20.12.24.
안성시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20.10.14.
예산군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2021.06.30.

○ 지방자치단체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부산광역시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단,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함)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
시흥시	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양산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유료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3. 공지
당진시	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금산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청주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유료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3. 공지
안성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예산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